



용인특례시
YONGIN
SPECIAL CITY

- 일 시 : 2024. 12. 26.(목) 10:00
- 장 소 : 보정동 행정복지센터

보정동 통장협의회 12월 임시회의 자료

보 정 동

●●● 목 차 ●●●

《시정 홍보》

1. 자동차세 납부 안내 1
2. 한파대응 행동요령 안내 2
3. 내 집 앞,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홍보 안내 3
4. 생애최초·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4

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. 납부기간 내 납부하실 수 있도록 주민들에 많은 홍보 바랍니다.



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



납부기간 : 2024. 12. 16.(월) ~ 2024. 12. 31.(화)

- 납세의무자**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
- 과세기간** 2024년 7월 ~ 12월
(과세제외 : 2024년 1, 3, 6, 9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)
- 연세액(1월 연납) 일시납부 안내** 2024년 연납 기납부차량은 고지서 자동발송
▶ **신청기간 : 2025. 1. 16 ~ 1. 31** ▶ **납부기간 : 2025. 1. 16 ~ 1. 31**
(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, 납부기한 이후에는 납부 불가능함)
-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** (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합니다.)
 - ▶ 은행 CD/ATM 납부(전국 어디서나) ▶ ARS 납부 : ☎142211
 - ▶ 인터넷 납부 : 위택스(www.wetax.go.kr), 지로
 - ▶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(농협·기업·하나·국민·신한)
 - ▶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(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)
이체정보 입력 시 입금은행 '지방세입' 입금계좌번호'지방세입계좌 (전자납부번호)'를 입력 후 계좌이체 실행
 - ▶ 정기분 고지서 전자송달 : 위택스, 카카오페이 pay, 네이버페이 Pay+, 페이코 PAYCO
및 각종 금융사 앱에서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
다음달부터 스마트폰 또는 이메일로 고지서 수령
(1건당 세액공제 800원, 자동이체·전자송달 동시 신청 최대 1,600원)

☎ 문의처
처인구청 세무1과 031-6193-5173 / 기흥구청 세무1과 031-6193-6173 / 수지구청 세무과 031-6193-8173

※ 문의 : 기흥구 세무1과(☎ 031-6193-617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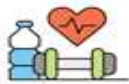
겨울철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한파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해드리오니, 많은 주민들에 홍보 바랍니다. 특히 노약자, 어린이 등 한파에 취약할 수 있는 주민들에 적극 안내 부탁드립니다.

건강한 겨울나기 이렇게 하세요!



TV나 라디오의 한파 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세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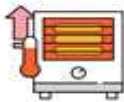
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하세요!



가벼운 **실내운동**으로
신체활동이 부족하지 않게 하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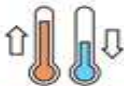
적절한 **수분섭취**와
고른 영양분을 갖춘 식사하기
(주류나 카페인 음료는 자제)



난방기구 사용 시 적정 **실내온도**
(18~20℃)를 유지하고
일정한 시간마다 **환기**하기



수도관, 보일러 배관 등은
보온재(현 옷 등)로 미리 보온
조치하기



체온, 실내온도 및 습도* 자주 확인하기

* (실내습도 유지요령) 젖은 빨래(수건) 널기, 물 떠 놓기, 물 젖은 옷 덩어놓기, 화분이나 수경식물 기르기, 토피어라니 어항 이용하기 등

외출 시에는 이렇게 하세요!



추운 날씨에는
가급적 **야외활동** 자제하기





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에는
수도꼭지를 조금 열어
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 방지하기



부득이하게 **외출**할 때에는 **내복, 목도리, 모자, 장갑** 등을 꼭 착용하고,
조금 크고 가벼운 옷으로 **여러 벌** 껴입기

 **응급상황 시
비상연락처**

 **119 중앙응급구조대**
구조, 구급 등 긴급상황 시 연락

 **129 보건복지상담센터**
건강상담과 복지생활 지원요청

※ 문의 : 용인시 노인복지과(☎ 031-6193-2466)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7조 및 「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의거하여 건축물 주변의 보도,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, 겨울철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주민들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관련법령

○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

- 건축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(이하 “건축물관리자”라 한다)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, 이면도로, 보행자 전용도로, 시설물의 지붕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)에 대한 제설·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.

○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3조

-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·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,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·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.

□ 눈을 치워야 하는 책임 순위

- (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) 소유자 → 점유자 또는 관리자
- (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) 점유자 또는 관리자 → 소유자

□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

- (주간)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
- (야간) 다음날 오전 11시까지, 1일 내린 눈이 10센티 이상이면 24시간 이내

□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

- (보도, 이면도로, 보행자전용도로)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
- (시설물의 지붕)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

※ 문의 : 용인시 도로구조물과(☎ 031-6193-3296)

국민 주거안정의 실현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신생아 출산 가정의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.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바랍니다.

□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

용인특례시
YONGIN SPECIAL CITY

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

감면대상

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최대 200만원 공제
(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 사실이 없는 무주택 가구, 단 미성년자 제외)

감면요건

취득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하는 경우(부담부증여 제외)

추징요건

-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은 경우(전입신고 필수)
-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
-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(임대 등)로 사용하는 경우

관련법령

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및 시행령 제17조의3

기흥구청 세무2과
☎ 031-6193-6181
☎ 031-6193-6183

□ 출산·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

용인특례시
YONGIN
SPECIAL CITY

출산·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!



감면대상

2024. 1. 1. ~ 2025. 12. 31. 자녀를 출산한 부모(미혼모·미혼부 포함)

감면요건 ※ 4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가능!

- 첫째, 2024. 1. 1. 이후 취득한 주택
- 둘째,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 취득
- 셋째, 주택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
- 넷째, 1가구 1주택자

추징요건

- 주택 취득일(또는 출산일)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(전입신고 필수)
-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 내 주택을 매각·증여 또는 타 용도(임대 포함)로 사용하는 경우

유의사항

- 생애최초주택구입 감면(200만원)과 중복 적용 불가

기흥구청 세무2과
☎ 031-6193-6181
☎ 031-6193-6183



※ 문의 : 기흥구 세무2과(☎ 031-6193-6181)